(뒤쪽) 작성방법 1.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폐쇄(철수)한 지점,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 2. ⑩ 해외영업소명과 ⑬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(full name)으로 적습니다. 3. ⑪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본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｢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｣ (9자리)를 적어야 하며,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(법인세과)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(첨부서류 포함)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⑭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번호(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)를 적습니다. 4.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(裁定)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⑲적용환율,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⑳ 적용환율에 적습니다. (예：미달러화의 경우 930.00/USD 방식으로 적습니다) 5. ⑯ 설립형태는 “1. 지점” 과 “2. 사무소” 중 해당되는 항목의 [ ]에 √표를 합니다. 이 경우 해외영업소가 지점에 해당함에도 사무소에 √표를 한 경우에는｢2. 해외지점 경영상황｣을 적을 수 없으니 주의바랍니다. 6. ⑱ 직원 수는 본점파견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,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 수는 별도로 ( )내에 적습니다. 7. ｢2. 해외사업장 경영상황｣은 ⑯ 설립형태 중 “1.지점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 8. 본점지원경비는 지원항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영업소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. 9. ㉒ 회수금액은 해외영업소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(할) 금액을 적습니다. 10.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㉑ 폐쇄일에 원래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. 11. 제출대상 해외영업소의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.